

-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-
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
공고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1월 25일

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선발개요

임용예정 분 야	임용예정 직 급	임용예정 인 원	근무 기간	근무예정 부 서
입법지원 전담인력	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(6급)	1명	2년	입법정책 담당관실
정책지원관 ※ 주35시간 (1일 7시간)	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1명	1년	전문위원실

※ (입법지원 전문인력)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,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

※ 근무예정부서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. 임용예정분야별 주요업무

임용예정 분 야	임용예정 직 급	주요업무 내용
입법지원 전담인력	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(6급)	◇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법제심사 ◇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◇ 입법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 ◇ 기타 지방의회 법제 및 운용에 관한 조사·연구·분석 등

정책지원관	시간선택제임기제 '다'급 ※ 주35시간	◇ 조례안(제정,개폐)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 정책 검토 ◇ 의원의 예산·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◇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◇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◇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◇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◇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지원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3. 채용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(행정안전부 최신 예규)
- 「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」

4. 응시자격 요건

- 공통응시자격 요건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 - 응시연령 : 18세 이상
 - 국 적 :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 - 지역·성별은 제한사항 없음. 단,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
《 지방공무원법 제31조 : 결격사유 》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※ 단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응시자격

- 아래의 자격 요건 중,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임용예정분야	응시자격요건
입법지원 (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)	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 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 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 이 있는 사람
	1)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정부, 국회, 지방자치단체(지방의회 포함), 공공기관, 정부 및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, 법인, 대학(부설 연구기관 포함), 연구기관 등에서 법령·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, 입법정책 연구·조사·분석 관련 업무 근무한 경력

정책지원관 (시간선택제 임기제‘다’급) ※ 주35시간	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이 있는 사람 1)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정부, 국회, 지방자치단체(지방의회 포함), 공공기관, 출자출연기관, 법인, 대학(부설 연구기관 포함),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자치, 지방행정, 감사, 예산, 정책기획, 법제, 법 제도 연구·조사 및 분석 등의 근무경력
---	---

<공통사항>

- ◇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**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으로** 판단함
- ◇ 경력산정 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

<경력의 범위>

- ◇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**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**에 해당하는 경력을 의미하며,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(**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**)
 - *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
- ◇ 근무경력 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, **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**
- ◇ 기관의 폐업 등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, 대체(보완)서류 제출
 - * 대체(보완)서류 예시 : 폐업사실증명서,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서, 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
 - *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,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,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

5. 보수수준

○ 일반임기제
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, 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(단위: 천 원)

임용예정 직급	상 한 액	하 한 액
지방행정주사(6급)	81,239	54,132

※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, 별표 13에 따름

○ 시간선택제임기제 ‘다’ 급

(단위 : 천 원)

임용예정 직급	상 한 액	하 한 액
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58,096	41,262

※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 및 제35조

○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6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<서류전형 기준>

1. 자기소개서
2. 직무수행 계획서
3. 임용예정분야와 실무경력 등의 적합성 및 연관성

나. 인성검사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
- 인성검사 결과 분석자료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층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

※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 공고 시, 검사요령 및 기간을 안내

다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 평가
 - (평가요소)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,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경우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(총점)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

7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'24. 2. 6.(화) ~ 2. 8.(목) * 접수시간 : 09:00 ~ 18:00

나. 접수장소 :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

※ 우)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,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관실 인사팀

다.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(등기)

- ❖ 우편 접수 시, 「우체국 통상환증서(해당 접수금액 상당)」를 구입하여 동봉해 주시기
바라며, 2024. 2. 8.(목)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❖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반드시 유선으로
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(☎033-249-5752),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등 별도 방법
으로 고지·송부합니다.

라. 제출서류 ※ 스테이플러, 제본철, 양면인쇄 등 불가(개별 낱장으로 제출)

《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(모든 서류 공통) 》

- ❖ 시험응시에 필요한 필수서류의 미비,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불가
- ❖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
- ❖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불인정

① 응시원서 1부 * 강원도수입증지(7,000원)

※ 도청 민원실(별관 1층)에서 인증(우편 접수 시 해당금액 동봉)

② 이력서 1부

※ 이력서의 경력 및 학위사항은 경력(재직)증명서 및 졸업증명서(학위증서)를 제출한
사항만을 기재 /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③ 자기소개서(A4용지 2~3매 정도) 1부

④ 직무수행계획서(직무제안 포함 A4용지 5매 이내 : 자유서식) 1부

⑤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1부

⑥ 경력증명서 1부
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, 경력
(재직)증명서 제출경력만을 인정(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)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,
응시자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근무기간, 상근/비상근 여부 등이
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
 - *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에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기
- 제출된 경력(재직)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
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응시자가 경력(재직)증명서
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

⑦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
- 관련 자료는 ‘⑥ 경력(재직)증명서’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,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,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(재직)증명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

⑧ 연구실적 목록, 논문(또는 연구보고서) 요약서 및 증빙자료 1부(해당자만 제출)

- ‘논문 요약서 및 증빙자료’를 모두 제출한 사항만을 목록에 작성
 - ※ 논문 건별로 ‘요약서(A4용지 1매 / 자유서식) 및 논문표지 사본 등 증빙자료’ 등을 연구실적목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(논문 책자, 제본철 등 제출 불가)

⑨ 기타 어학성적, 기타 자격증, 관련 수상경력 등 1부(해당자만 제출)

- ※ 어학능력성적표는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만 인정

⑩ 학사(전문학사 포함) 이상의 졸업증명서(학위증서) 1부

- 석(박사) 이상 졸업자의 경우, 대학교(학사) 이상 관련 자료 모두 제출
-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제출

⑪ 주민등록초본(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
⑫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
⑬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안내 1부

8. 시험일정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 발표

- '24. 2. 15.(목) 예정 / 인성검사, 면접시험 일정 등 공고 예정

나.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

-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, 일정 등 공고 예정

다. 2차 시험(면접시험) :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, 일정 등 공고 예정

라. 최종합격자 발표 :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, 일정 등 공고 예정

※ 도의회 홈페이지(의회소식-시험정보) 및 도 홈페이지(도정마당-채용정보) 참조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발생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

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**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**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우수자 순으로 **추가 합격자를 결정**할 수 있음

9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 하며, 불합격자에 한해 원하는 경우 원본 서류는 반환 가능합니다.
- 다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.
- 바. 합격자의 결정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(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하되, “상”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“중”의 개수로 함)으로 하며, 평정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대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- 사.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아.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- 자.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차.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카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(☎ 033-249-575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채용예정직에 대한 직무기술서

□ 입법지원 요원 /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행정주사(6급)

근무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	선발예정인원
강원특별자치도의회	입법정책담당관실	1명

주요업무	○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법제심사 ○ 자치법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○ 입법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 ○ 기타 지방의회 법제 및 운용에 관한 조사·연구·분석 등
------	--

필요역량	○ (공통역량) 윤리의식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기획력, 판단력, 논리적·분석적 사고 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우선순위 판단능력, 집행부 및 의원과의 협의 시 의사소통 등 협상 능력, 팀워크 지향
------	--

필요지식	○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전문지식 ○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전반적 지식 ○ 조례 입안절차 및 조례 제·개정문 작성 등 법제 전문지식 ○ 지방자치법 및 자치입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 ○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
------	---

임용분야	임용직급	응 시 자 격 요 건
입법지원	지방행정 주사 (6급)	1.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 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 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 이 있는 사람
		1)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정부, 국회, 지방자치단체(지방의회 포함), 공공기관, 정부 및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, 법인, 대학(부설 연구기관 포함), 연구기관 등에서 법령·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, 입법정책 연구·조사·분석 관련 업무 근무한 경력

□ 정책지원관(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)

근무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	선발예정인원
강원특별자치도의회	사회문화전문위원실	1명

주요업무	○ 조례안(제정,개폐)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○ 의원의 예산·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○ 의원의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○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지원
------	---

필요역량	○ (공통역량) 윤리의식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기획력, 판단력, 논리적·분석적 사고 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우선순위 판단능력, 집행부 및 의원과의 협의 시 의사소통 등 협상 능력, 팀워크 지향
------	--

필요지식	○ 정책 발굴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에 관한 지식 ○ 조례 입안절차 및 조례 제·개정문 작성 등 법제 전문지식 ○ 지방자치법 및 자치입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 ○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
------	---

임용분야	임용직급	응 시 자 격 요 건
정 책 지 원 관	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급	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 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 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</u> 이 있는 사람
		¹⁾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정부, 국회, 지방자치단체(지방의회 포함), 공공기관, 출자출연기관, 법인, 대학(부설 연구기관 포함),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자치, 지방행정, 감사, 예산, 정책기획, 법제, 법 제도 연구·조사 및 분석 등의 근무경력